

##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특수판매업체(방문판매·후원방문·다단계, 미신고·미등록 포함), 준대규모점포, 편의점 방역조치 고시

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시행과 관련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, 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특수판매업체(방문판매·후원방문·다단계, 미신고·미등록 포함), 준대규모점포, 편의점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10월 18일

서울특별시장

1. 적용기간 : 2021년 10월 18일(월) 0시 ~ 2021년 10월 31일(일) 24시
2. 적용대상 :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
  - 서울시 소재 특수판매업(다단계·후원방문·방문판매, 미신고·미등록 포함) 집합·판매 영업장소
  - 서울시 소재 준대규모점포(면적무관)
  - 서울시 소재 편의점
3. 적용내용 : 대상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및 이용자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

□ 특수판매업(다단계·후원방문·방문판매, 미신고·미등록 포함) 집합·판매 영업장소

-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(인센티브)은 거리두기 4단계 시 적용하지 않음  
 - 단, 적용기간(10.18.~10.31.) 중 사적 모임은 모임행사 방역수칙에 따라 최대 8명(접종 미완료자는 최대 4명 포함 가능)까지 가능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공통수칙	<b>① 방역수칙 준수</b>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</li> <li>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</li> <li>-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</li> </ul> <p>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방역수칙 준수</li> </ul>
	<b>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</b>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</li> </ul>
	<b>③ 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</b>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</li> <li>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</li> <li>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</li> <li>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의 작성 제외 가능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</li> <li>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</li> <li>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의 작성 제외 가능</li> </ul>
	<b>④ 마스크 착용</b>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관리자 · 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</li> </ul>
<b>⑤ 음식제공 및 섭취 금지 등</b>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음식물 제공 및 섭취, 공연, 노래부르기 금지 및 안내</li> <li>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음식물 섭취, 노래부르기 금지</li> <li>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가능</li> </ul>	
<b>⑥ 손씻기</b>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손 씻기, 손 소독하기(권고)</li> <li>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, 손소독하기</li> </ul>	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	(권고)
	<b>㉞ 밀집도 완화(단계별 기준 적용)</b>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단계별 이용인원 기준 적용</li> <li>▪ 이용자 간 2m(최소1m) 거리두기 유지</li> </ul>	
	<b>㉟ 환기하기</b>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행사 등 영업활동 전/후 반드시 환기</li> <li>-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</li> </ul> </li> <li>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</li> </ul>	
	<b>㊱ 소독하기</b>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일 1회 이상 소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행사 등 영업활동 전/후 반드시 소독</li> <li>- 소독대장 작성</li> </ul> </li> <li>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</li> </ul>	
	<b>㊲ 기타</b>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방역관리자 지정</li> <li>▪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대장작성)</li> </ul>	
	<b>★ 시설 내 공용 장소</b>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흡연실,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흡연실,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준수</li> </ul>
추가 적용 수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운영시간 제한 해제</li> <li>- 이용인원 제한(시설 신고·허가면적 8㎡당 1명)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이용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운영시간 제한 해제</li> <li>- 이용인원 제한(시설 신고·허가면적 8㎡당 1명)</li> </ul> </li> </ul>

### <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>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흡연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위치 표시</li> <li>▲ 한쪽 방향을 보도록 표시</li> <li>▲ 대화 금지 안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위치 표시</li> <li>▲ 흡연실 내 대화 금지</li> </ul>

<b>화장실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</li> <li>▲ 줄 설 때 1m 거리둘 수 있도록 간격 표시</li> <li>▲ 사용 전/후 반드시 손씻기 안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</li> <li>▲ 대기 시 앞사람과 간격 1m 거리두기</li> <li>▲ 사용 전/후 손씻기</li> </ul>
<b>탈의실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</li> <li>▲ 탈의실 내 대화 금지 안내</li> <li>▲ 가능한 락커 한 칸 띄어 사용 안내</li> <li>▲ 손소독제 배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</li> <li>▲ 탈의실 내 대화 금지</li> <li>▲ 공용물품 만진 후, 손씻기 또는 손소독(권고)</li> </ul>
<b>샤워실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샤워실 내 대화 금지 안내</li> <li>▲ 짧은 시간 이용하기 안내</li> <li>▲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</li> <li>▲ 공용물품* 배치 자제 * 로션, 수건, 드라이어기 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샤워실 내 대화 금지</li> <li>▲ 가급적 짧은 시간 이용하기</li> <li>▲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</li> <li>▲ 가급적 개인 물품 지참</li> </ul>
<b>휴게실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</li> <li>▲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안내</li> <li>▲ 대화 자제 안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</li> <li>▲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</li> <li>▲ 대화 자제</li> </ul>
<b>탕비실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</li> <li>▲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까지로 제한 안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</li> <li>▲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으로 하기</li> </ul>
<b>민원 창구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투명 가림막 설치 권장</li> <li>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</li> <li>▲ 대기선 및 좌석 거리두기 표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</li> <li>▲ 대기 시 간격 1m 거리두기</li> </ul>

□ 준대규모점포 (면적 무관)

-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(인센티브)은 거리두기 4단계 시 적용하지 않음
  - 단, 적용기간(10.18.~10.31.) 중 사적 모임은 모임행사 방역수칙에 따라 최대 8명(접종 미완료자는 최대 4명 포함 가능)까지 가능

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▲ 운영시간 제한 없음	▲ 운영시간 제한 없음	▲ 운영시간 제한 없음	▲ 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·이용 제한
		▲ 출입명부 관리(3~4단계, 300㎡ 이상인 경우만 권고)	
▲ 2m(최소1m)이상 거리 두기	▲ 판촉용 시음·시식 금지,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건본품 제공 금지 ▲ 휴게공간 이용금지 ▲ 집객행사 금지 ▲ 출입자 발열체크		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공통 수칙	<b>① 방역수칙 준수</b>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</li> <li>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방역수칙 준수</li> </ul>
	<b>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</b>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</li> </ul>
	<b>②-1 출입자 명부작성·관리(3~4단계, 300㎡ 이상인 경우만 권고)</b>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</li> <li>■ 출입명부 4주 보관 후 폐기</li> <li>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</li> <li>**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의 작성 제외 가능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</li> <li>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</li> <li>**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의 작성 제외 가능</li> </ul>
	<b>③ 마스크 착용</b>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</li> </ul>
	<b>④ 손씻기</b>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손 소독하기 또는 손 씻기(권고)</li> <li>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 소독 또는 손씻기</li> </ul>
<b>⑤ 밀집도 완화</b>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 안내</li> <li>* 대기 줄을 서는 경우, 군집행사 등 개최 시 2m(최소1m) 이상 간격을 둘 수 있도록 바닥에 표시</li> <li>- 대기인원 20명 이하 운영 안내, 방문 예약제 등 적극활용(권고)</li> <li>- 이용자 간 거리유지를 위해 충분한 통로 확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 및 시설 이용 시간 최소화(권고)</li> <li>- 대기 시에도 2m(최소1m) 간격 유지, 방문예약제 적극활용</li> </ul>	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밀집도 높은 구역은 한방향 이동 및 실외판매부스 설치 등으로 인원분산 유도(권고)</li> <li>■ 이용자 간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관할 지자체장은 시음시식 금지, 집객행사 금지, 휴게공간 폐쇄, 출입자 발열체크 실시 의무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(또는 이용자 간 최소 1m이상 거리두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관할 지자체장은 2단계 방역조치를 취할 수 있음)</li> </ul> <p><b>⑥ 환기하기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실내시설의 경우, 일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환기시간 게시(권고)</li> </ul> </li> <li>■ 자동환기시스템 갖춘 경우, 영업시간 중 상시가동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기계설비 안전관리로 휴동하는 경우 자연환기 실시</li> </ul> </li> </ul> <p><b>⑦ 소독하기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일 3회 이상 소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(쇼핑용카트) 등</li> </ul> </li> </ul> <p><b>⑧ 기타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방역관리자 지정</li> <li>■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</li> </ul>	
추가 수칙	<p><b>① 공용공간 등 방역수칙 준수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흡연실 화장실 탈의실 휴게실 등 공용 공간 수칙 적용</li> </ul> <p><b>② 휴게공간 제공 최소화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휴게공간 제공 최소화</li> </ul> <p><b>③ 부대시설 방역수칙 준수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준수 및 안내</li> <li>■ 문화센터의 경우 강의실 당 시설 허가신고 면적 6㎡당 1명 또는 이용자 간 2m 이상(최소1m) 간격 유지 안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노래, 관악기연주, 댄스, 체육 강좌 등은 자제(권고)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흡연실 화장실 탈의실 휴게실 등 공용 공간 수칙 준수</li> <li>■ 휴게공간 이용 최소화</li> <li>■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준수</li> <li>■ 문화센터의 경우 시설 이용 전 이용 가능 인원 확인 및 이용자 간 2m 이상(최소1m) 간격 유지(권고)</li> </ul>

## <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>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흡연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위치 표시</li> <li>▲ 한쪽 방향을 보도록 표시</li> <li>▲ 대화 금지 안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위치 표시</li> <li>▲ 흡연실 내 대화 금지</li> </ul>
화장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</li> <li>▲ 줄 설 때 1m 거리둘 수 있도록 간격 표시</li> <li>▲ 사용 전/후 반드시 손씻기 안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</li> <li>▲ 대기 시 앞사람과 간격 1m 거리두기</li> <li>▲ 사용 전/후 손씻기</li> </ul>
탈의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</li> <li>▲ 탈의실 내 대화 금지 안내</li> <li>▲ 가능한 락커 한 칸 띄어 사용 안내</li> <li>▲ 손소독제 배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</li> <li>▲ 탈의실 내 대화 금지</li> <li>▲ 공용물품 만진 후, 손씻기 또는 손소독(권고)</li> </ul>
샤워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샤워실 내 대화 금지 안내</li> <li>▲ 짧은 시간 이용하기 안내</li> <li>▲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</li> <li>▲ 공용물품* 배치 자제 * 로션, 수건, 드라이어기 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샤워실 내 대화 금지</li> <li>▲ 가급적 짧은 시간 이용하기</li> <li>▲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</li> <li>▲ 가급적 개인 물품 지참</li> </ul>
휴게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</li> <li>▲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안내</li> <li>▲ 대화 자제 안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</li> <li>▲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</li> <li>▲ 대화 자제</li> </ul>
탕비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</li> <li>▲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까지로 제한 안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</li> <li>▲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으로 하기</li> </ul>
민원창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투명 가림막 설치 권장</li> <li>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</li> <li>▲ 대기선 및 좌석 거리두기 표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</li> <li>▲ 대기 시 간격 1m 거리두기</li> </ul>

□ 편의점

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- 22시~익일 05시까지 포장·배달만 허용 -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조치 및 안내	- 22시~익일 05시까지 포장·배달로만 이용 -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
* 식품위생법령 상 영업의 종류 무관, 자유업 포함	

4. 법적근거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제2호, 제80조제7호 및 제49조 제1항제2호의2호, 제83조제2항 및 제4항
- ※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이 공포(7.7.)됨에 따라 시설 별 (기본)방역수칙 중 ‘운영시간 제한’ 위반의 경우,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제2호 및 제80조제7호 적용(집합제한 조치 위반)

**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** ①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2.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

2의2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
**제80조(벌칙)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7. 제47조(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) 또는 제49조제1항(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)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

**제83조(과태료)**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-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1.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
  2.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

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3항

**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③**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.

## 5. 위반 시 조치사항

-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·이용자에 과태료 부과(감염병예방법 제83조)
  - ▶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(1차 150만원, 2차 이상 300만원),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(10만원)
- 집합제한 조치(운영시간 제한) 위반 시 고발 조치(감염병예방법 제80조)
-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, 시설 폐쇄명령(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)

위반사항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 기준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이상 위반
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49조 제3항				
가.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나. 소독,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
○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

## 6.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1년 10월 18일(월) 0시부터

7.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,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## 8. 불복절차 등

○ 이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

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-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.

## 9. 담당부서

- 서울특별시 노동·공정·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(특수판매업 2133-5352, 준대규모점포 2133-5159, 편의점 2133-5359)